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141
TEL. 031-8036-8036 FAX. 031-8036-8905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Fresh Energy OSAN

교|육|도|시 오산
City of Education Osan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Fresh Energy
OSAN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CONTENTS

오산시 (부서별)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세정과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기간 및 공제율 조정 8

02. 민원여권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9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시행에 따른 신분증 활용 방법 안내 11

03. 희망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13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4
행정복지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15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지원 확대 추진 16

04. 아동청소년과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 17

05.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확대 사업 18
장애인연금 인상 지원 19

06.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등록 실시 20

07. 주택과
청년 주거급여 제도 실시 21

08. 대중교통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자격 완화 22

09. 스마트교통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23

10.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24

11. 환경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5

12. 청소자원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26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28

13. 생태하천과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9

14. 중앙도서관
오산 도서관 일회용 컵 배출 제로화 선언 30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CONTENTS

정부부처 (분야별)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금융·재정·조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3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3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3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40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41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4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4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44
증권거래세율 인하 4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46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47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48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49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5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1

02.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54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56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57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5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59

03. 국방·병무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62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63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64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65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66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67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68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69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70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71

04. 행정·안전·질서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74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5
국가송무체계 개선 77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78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79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80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81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82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8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84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85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86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87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88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89

05.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92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93

06. 농림·수산·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9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인상 97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98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99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100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101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10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103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104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105

07.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08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109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110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111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112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114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115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116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117

09. 보건·복지·고용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120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12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24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1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126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12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128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129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130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131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132

10. 국토·교통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13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35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오산시 (부서별)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세정과
02 민원여권과
03 희망복지과
04 아동청소년과
05 노인장애인과
06 지역경제과
07 주택과
08 대중교통과
09 스마트교통안전과
10 건강증진과
11 환경과
12 청소자원과
13 생태하천과
14 중앙도서관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기간 및 공제율 조정

세정과 차량세무팀 (☎ 8036-6149)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하려는 경우 공제기간과 공제율을 조정

지금까지는

- 자동차세 연납 시 연세액의 10% 공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변경되는 공제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율	선납세액의 10%	선납세액의 10%	선납세액의 7%	선납세액의 5%	선납세액의 3%

연납시 자동차세 공제

주요내용	연납세액 일시납 시 공제기간 및 공제율 조정
시행일	2021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민원여권과 여권팀 (☎ 8036-7290)

민원인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 민원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발급 과정을 거쳐 여권 수령 **(총 2회 방문)**

2020년 12월 18일부터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한 경우 수령 시 1회만 민원창구 방문
  -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
  - 여권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민원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 수령
    ※ 민원창구 방문 횟수 감소(2회→1회)로 민원인 편익 증진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신청방법**
  - 국내거주자 : 정부24(http://www.gov.kr)
  - 해외거주자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통해 민원인의 번거로움 해소 및 민원창구 혼잡도·대기시간 개선 등 간편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
	시행일	2020년 12월 18일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시행에 따른 신분증 활용 방법 안내

민원여권과 여권팀 (☎ 8036-7290)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 여권 개인정보면 주민등록번호란(주민등록번호/Personal No.)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발급됨

2020년 12월 21일부터

- 여권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어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 가능
  -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 및 여권대행기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
  -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 가능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함.

  ※ 상세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신분증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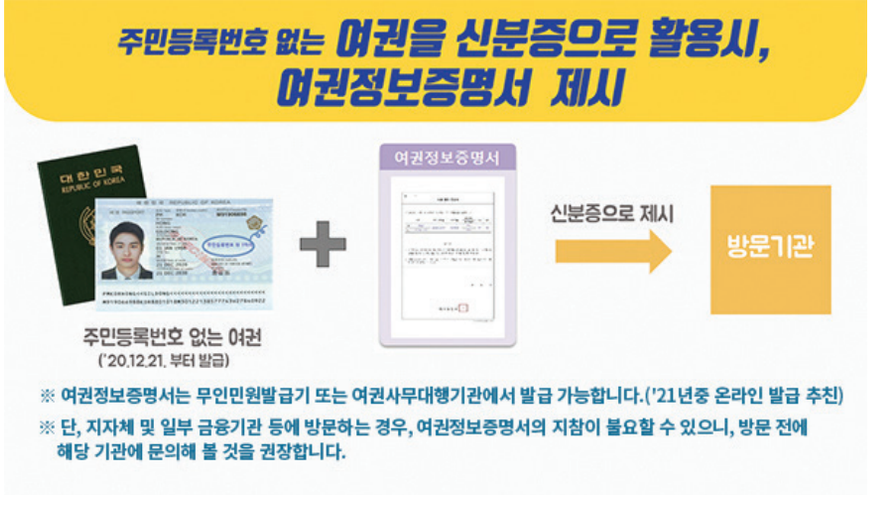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시행으로 여권정보증명서 등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0년 12월 21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희망복지과 복지정책팀 (☎ 8036-740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및 연령구간이 조정됩니다.

보훈수당 인상 및 연령구간 조정

현행	개정
• 만65세 미만 : 3만원 • 만65세 이상 : 6만원 • 만80세 이상 : 10만원	• 만75세 미만 : 7만원 • 만75세 이상 : 11만원

- 신청대상 : 오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기타사항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보훈수당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및 연령구간 조정 - 보훈수당 7~11만원으로 인상 - 연령구간 2구간으로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 8036-741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적용이 폐지됩니다.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 가구 기준)

구분	급여기준	구분	급여기준
생계급여	1,462,887	주거급여	1,950,516
의료급여	2,194,331	교육급여	2,438,145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이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오산시
희망복지과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행정복지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희망복지과 복지서비스팀 (☎ 8036-7412)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 (복지·주거·고용 등)에 대한 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

종합상담

: **읍면동에 「종합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으로의 주민 접근성 강화**

기 존		확 대
• 대상 : 복지욕구가 있는 주민 중심 • 공적 서비스 제공 중심 •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미흡	+	• 대상 : 모든 주민 • 지역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발굴·협력

기 존		확 대
• 대상 : 취약계층 위주 발굴 • 방법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으로 수행	+	• 대상 :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 • 방법 : 공공 민간기관, 협의회 및 주민 등으로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 기존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실시

기 존		확 대
• 기존 파악된 자원 제공 • 지역 내 기관과 미연계로 개별적 사례관리	+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게이트키퍼 기능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요내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 코로나19 복지사각 위기도민 발굴·지원 강화 -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지원 확대 추진

희망복지과 복지서비스팀 (☎ 8036-7422)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도민 발굴·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기준 추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 '20.12.31 ➡ '21.3.31.까지

한시적 기준완화 내용

구분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위기사유	대상(현행)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5. 휴·폐업 등	
	한시적 확대		현행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코로나19 여파 위기사유 추가(지침확대)** ①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비정규직 등) ②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③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④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의 위기사유 추가인정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기준 : 365만원)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100%이하 (4인가구 기준 :438만원 →487만원)
	재산	중소도시(시)	118백만원 → (21년 한시) 2억원	242백만원 → (21년 한시) 3억 39백만원
	금 융		*생활준비금 확대 500만원 → (4인가구 기준 완화 시)1,231만원	*생활준비금 확대 1,000만원 → (4인가구 기준완화 시)1,731만원
지원내용	생계(4인가구기준)		1,266,900원	1,266,900원
	의료		300만원(최대 2회)	500만원(최대2회)
	주거(3~4인가구 기준)		42.3만원(郡:24.3)	64.3만원(郡:42.3)
	복지시설이용(道:사례관리)		4인 가구 기준 월 145만원	가구별 400만원 한도 (1회 한해 50만원 선지원, 심사제외)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구직활동비, 전기요금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지원 확대

주요내용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지원확대 추진

시행일 2021년 1월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 8036-7892)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의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이 새롭게 시작 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만 13세 ~ 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기준 : 관내 1년 이상 거주 및 월 2회 이상 센터 이용 요건 충족
- 지원방법 : 지역화폐를 통한 수당 지급
- 지원금액 : 월 50,000원 (최대 연 600,000원)
- 지원범위 : 교육비, 진로탐색 활동비, 재료비 등
  - 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중복 항목 지원 불가
  *사용불가업소 :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지역화폐 사용제한처 동일)
- 신청 및 이용 방법 :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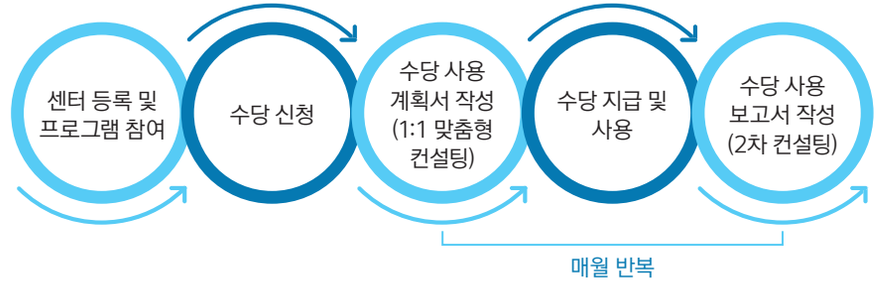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

주요내용 대상 :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
기준 : 오산시 1년 이상 거주 및 월 2회 이상 센터 이용
내용 : 월 50,000원 지역화폐 지급

시행일 2021년 1월

기초연금 지급 확대 사업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8036-7445)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지금까지는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 기준연금액 254,760원
- 소득하위 40%까지 최대급여액(300,000원)지급

2021년 1월 1일부터는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기준연금액 300,000원
- 소득하위 70%까지 최대급여액(300,000원)지급

기초연금

주요내용
- 선정기준액 변경
  (단독가구 1,480,000원 → 1,69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 2,704,000 원)
- 기준연금액 변경(254,760원 → 300,000원)

시행일 2021년 1월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인상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8036-7459)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최대 기초급여 254,760원, 부가급여 20,000원씩 지급되었음.

2021년부터는

-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지원 금액 최대 기초급여 300,000원으로 확대되어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현행	개정
• 기초급여 254,760원 • 부가급여 20,000원	• 기초급여 300,000원 • 부가급여 20,000원

장애인 연금

주요내용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
(기초급여 254,760원→300,000원)

시행일 2021년 1월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등록 실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8036-755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화폐 「오색전」가맹점에서만 오색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개정
• 제한업종 외 모든 BC카드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오색전 결제 가능	• 오산시에 등록된 오색전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결제 가능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주요내용 기존 간주 가맹점 사후 등록
- 추진기간 : ~ 2021. 3. 31. 한
  - ☞ 2020년 10월 5일부 관련법 개정안 시행
  - ☞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가맹점 결제 불가 (미등록 가맹점 결제 유예기간 : 2021. 3. 31.한)
- 등록방법 : 온라인을 통한 가맹 의사 확인 및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 https://with.konacard.co.kr/1-22
  - 오프라인 :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및 현장 마케터 접수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부터(미등록 가맹점 결제 불가)

청년 주거급여 제도 실시

주택과 공동주택팀 (☎ 8036-7769)

학업, 구직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분리지급 실시

현행	개정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	학업, 직장,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급

-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주거급여제도

주요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시행일 2021년 1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자격 완화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 8036-7723)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자격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사업구역 내 사업용 자동차를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하거나 오산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3년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됐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 오산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일반인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5일 40시간)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 교육 신청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 운전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육문의 : 031-8053-9800(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양수자격 완화

주요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자격 완화
택시산업 인력구조 개편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기대

시행일 2021.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지도팀(☎ 8036-6800)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5년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3%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개정(안)
범칙금·과태료 (승용차기준)	4만원	8만원	12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주요내용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개정(안)
범칙금·과태료 (승용차기준)	4만원	8만원	12만원

시행일 2021년 5월 11일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8036-6620)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2021년 1월부터는

-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영유아 초기(생후14일~35일) 검진을 신설하여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 영유아건강검진 총 7차 진행 (생후 4개월~71개월까지)	•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검진 추가 실시하여 총 8차 진행 (생후 14일~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회차 변경 (기존 7회→8회)
	시행일	2021.4.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환경과 환경관리팀 (☎ 8036-6424)

도장공사 관리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건물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사업」으로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 도장공사 시 스프레이를 사용한 뿜칠 도장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 마목 신설(2019.7.16.개정)에 따라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 뿜칠 도장이 금지되고 롤러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주요내용	공동주택 건물 외부 도장공사 시 비산먼지 신고
	시행일	2021.1.1.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청소자원과 자원재활용팀(☎ 8036-6729)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저하 등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

지금까지는

- 공동주택은 품목별 4종 이상, 단독주택은 혼합배출
- 압축·압착차량 사용 관련 규정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차량과 혼합사용 등에 관한 규정 미비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단독주택 관련 개정사항은 '21.12월부터 적용
- 재활용품 수거 시 압축·압착차량 사용금지 및 음식물쓰레기, 일반 종량제 쓰레기 수거·운반차량과 재활용품 수거 차량 혼용 금지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현행		개정
• 합성수지용기 트레이류 혼합 배출	➡	• 합성수지용기 중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0.12.25 부터 시행)

오산시
청소자원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

투명 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시행

주요내용	합성수지용기 트레이류 혼합 배출 용기 중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시행일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 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청소자원과 자원재활용팀 (☎ 8036-6729)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폐기물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줄이기 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 포장이** 금지됩니다.
- **규정 사항**
  - 판매 추가 포장 : 생산 완료 제품 또는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행사 기획 포장 :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 제품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 **예외 기준**
  -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준수 대상**
  - 제품 제조·수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면적 33㎡ 이상 매장

※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제조)되는 제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을 적용한다.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 시행		
	주요내용	포장제품의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재포장 금지
	시행일	2021년 1월(계도기간 3개월, 중소기업은 7월 적용)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생태하천과 수질총량팀 (☎ 8036-6776)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고자 함

지금까지는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이었음

2021년부터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후 개발·이용 시

- **지하수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 확약서로 대체)
- **서류간소화** :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수질검사 면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요내용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후 개발·이용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신고서류의 간소화
	시행일	2020.11.12. ~ 2021.5.3.(6개월)

오산시

중앙도서관

오산 도서관 일회용 컵 배출 제로화 선언

중앙도서관 도서관관리팀 (☎ 8036-6152)

오산도서관의 쓰레기통에는 이제 일회용 컵이 담기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 자율적으로 직원, 이용자, 행사(대관)시 일회용 컵을 사용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는

- 새로운 시대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른 작은 실천으로 시민평생교육기관인 도서관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 컵 배출 제로화를 선언합니다.
  - 전 직원은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 도서관이용자도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 행사 및 대관 참석자도 개인용 컵을 사용합니다.

  다만, 미처 개인용 컵을 준비 못한 행사 참석자를 위해서 컵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 **우리의 작은 불편을 이기면 사계절 늘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일회용 컵 배출 제로화 선언		
	주요내용	도서관 일회용 컵 배출 제로화 선언
	시행일	2021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정부부처 (분야별)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국방·병무
04 행정·안전·질서
05 문화·체육·관광
06 농림·수산·식품
07 환경·기상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9 보건·복지·고용
10 국토·교통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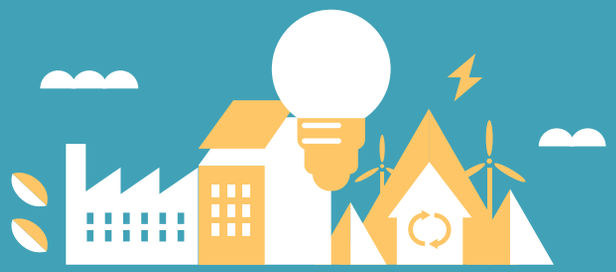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1

금융·재정·조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 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기본공제율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추가공제율 : 모든기업 3%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공제율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 7월)

통합투자 세액공제 신설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단,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20.7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법인) 3.0%, 6.0%
- 세부담 상한 인상
  - 현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개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현행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20년 90%)
  - 개정 :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 ('21년 95%)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 현행 :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 개정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20.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추진배경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 기존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개정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현행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확대대상**
  - 실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확대	
추진배경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주요내용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됩니다.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보험가입 간주 :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의무 신설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주요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구분	현행	'21 ~ '22년	'23년
코스피*	0.10%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0%	0.10%	0.10%
기 타	0.45%	0.43%	0.35%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7월)

증권거래세율 인하

추진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 원 ×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 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추진배경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 (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2)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9년 12월 30일)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추진배경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20.2.11. 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044-204-3422)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분양권 주택수 계산에 포함

추진배경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정부부처
국세청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044-204-3422)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조정

추진배경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주요내용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 044-204-3452)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상속세 신고인원 : ('15)5,452명 ('16)6,217명 ('17)6,970명 ('18)8,449명 ('19)9,555명

-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추진배경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시행일	2021년 2월 예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642)

全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이 '21.3.25일 시행됩니다.

-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6大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 부과
  -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이내) 부과근거 신설
  -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확대·신설
  - (피해방지) 청약철회권[1], 위법계약해지권[2], 판매제한명령권[3] 등
    *1)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2)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 관련 계약 해지 요구 가능
    3)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우려 시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 (사후구제)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전환(소비자 → 금융회사)하고,
  - 소송중지제도[1], 조정이탈금지제도[2] 등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시도 예방 제도를 신설
    *1)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 중지 가능
    2) 일반소비자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제 도		제정 전	제정 후
사전 규제	6大 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령상 규율 없음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사후 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신설된 권리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투자자문업, 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 없이 해지 가능)	없음	
사후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가능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판매제한명령권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 규정 없음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5.28.)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추진배경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주요내용
-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2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044-203-6342)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 셋째,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과제 발굴을 지속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 〉

AI의 영향과 시사점	정책방향 도출
(인재상) 인간-AI 협업시대, 인간 창의성, 감성에 집중→ 인간중심 사고에 기반하여 새 구조를 만드는 창의력 요구	감성적 창조 인재
(학습환경) AI는 학습자에 최적화된 학습방법과 자료 제공→ 학습자의 특성/수준/상황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대	초개인화* 학습환경
(정책과정) AI, 빅데이터 등 기반 행정혁신 시대→ 빅데이터 관리체계 필요 및 데이터 활용 포용정책 기대	따뜻한 지능화 정책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고도화되는 개인 맞춤형 방식

AI 교육을 학교에 도입합니다.

-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합니다.
-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히 고교에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됩니다.

AI 인재양성 지표를 개발합니다.

- 정부와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함께 발간합니다.
- 지표는 범정부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제안을 위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교육빅데이터위원회」가 출범합니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여, 교육 데이터의 축적·관리·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중요한 정책결정에 활용합니다.

  *(구성) 교육부장관(위원장), 교육기관협의회장 등(당연직), 교육데이터 소유자, 생성자, 활용자, 빅데이터전문가 등(이상 위촉직)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20.11.20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추진배경	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일관된 정책과제 발굴 유도
주요내용	• 3대 방향 : ①감성적 창조 인재, ②초개인화 학습환경, ③따뜻한 지능화 정책 • 유초중고 AI 교육 도입 : 관련 콘텐츠 개발, 과목신설 등('21년) → 2022 • 개정 교육과정 고시('22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5년) • 범정부 AI 인재양성 정책 비교·분석 등을 위한 지표개발('21년) •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신설('21년)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1)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개요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 (완성)
시행일	2021년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2)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보조교사 2.8만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천명 확대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배치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1년, 1,011천원)와 사용자부담금 (30%)을 지원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2021)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추진배경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주요내용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시행일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044-202-3361)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1년에는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추진배경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 (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시행일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가족부 '21년 예산('20.12.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배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
주요내용	•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시행일	2021년 1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3

국방·병무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도 국방예산 확정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주요내용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구분	봉급액
병장	540,900
상병	488,200
일병	441,700
이병	408,100

➡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구분	봉급액
병장	608,500
상병	549,200
일병	496,900
이병	459,100

➡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구분	봉급액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시행일 2021년 1월

정부부처
국방부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6)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먼저,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1045.「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추진배경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
-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시행일 2021년 2월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인력정책과 (☎ 02-748-5137),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징집)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소집) 국가가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병역법(대안)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 추가		
	추진배경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주요내용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 (병역법 제60조)
	시행일	2021년 6월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02-748-624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을 개선하겠습니다.

-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합니다.

  *기존 : 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 개선 : 육·해군·해병대 3주

- 또한,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일 표준 교육시간 : 1일 10H(정규 8H, 비정규 2H) / 총 교육시간 : 150H

  ** 교과중점 : 올바른 기본소양 함양, 군인 기본자세 확립, 기본 전투기술 및 생존능력 습득, 기초 전투체력 배양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기간 조정		
	추진배경	군별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을 통일하여 입영자원의 형평성 보장
	주요내용	• 상이한 군별 군사훈련 기간(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을 3주로 통일 • 보충역 임무달성을 위한 군사훈련 교육중점 사항 점검 및 1일 표준 교육시간표 편성
	시행일	2021년 1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무단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추진배경: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요내용:
-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시행일: 2021년 1월(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 퀵메뉴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1:1 병역진로상담
  - 군 특기 연계, 적성검사 실시 (직업선호도검사)
  - (병무청) 전문상담관 1:1 상담 → (각 군/고용부 등) 군 생활 및 취업 지원 안내·상담
- 군 생활 정보제공
  -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제공
- 군 적응 체험·교육
  -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체험관 운영
  *군 생활용품·사진 전시,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 ·군복·전투식량 시식 체험, 복무 중인 병사 이야기 등

시행일: 온라인 서비스(연중), 서울 수도권센터(연중), 영남·호남·충청권 센터 ('21년 하반기부터)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0)

내년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추진배경	색약이 있어도 조리병 임무수행 가능하여 지원자격 완화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정부부처
병무청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19년도 숙박비와 '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21년에는 식비를 인상합니다.
  *병역의무자여비란? 병역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합니다.
  *교통비(131.82원/km), 식비(7,000원/1식), 숙박비(50,000원/1박)
- 개선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7,000원으로 인상

추진배경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식비 인상 추진
주요내용	• 식비단가 1천원 인상 : '20년 6,000원 → '21년 7,000원 • 여비지급 대상자(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 동원훈련소집자 •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 (1식) 60 초과~300km, (2식) 300 초과~400km, (3식)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합니다.

- '21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고, 복무기관은 우수인력 투입으로 성과 창출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국민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됩니다.

- 그동안 각 軍별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상이(육군 4주, 해군 3주)하였으나,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효율적 운영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세분화하여 관련 복무기관 우선 배치 – (현행) 복지, 교육 전공 → (개선) 현행+보건, 의료, 문화, 환경, 안전 전공 • 군사교육소집 기간 4주에서 3주로 단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변경

추진배경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학력 차별 논란 해소 등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종전)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시행일	2021년 2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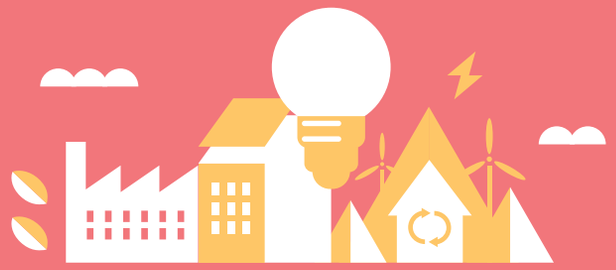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4

행정·안전·질서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1644-2381),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 4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체 이산가족이 실태조사 대상이며 현재까지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형제 등)이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도 신청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 아울러 최초 신청 당시 이후 연락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동 기간 중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 : reunion.unikorea.go.kr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관련근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주요내용	① 기간 : 2021.4월~8월 ② 조사대상 : 국내 이산가족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 ③ 방법 : 온라인·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방문 조사 ④ 안내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1644-2381)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시행일	2021년 4월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695)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0.10월)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배경 가정폭력범죄 심각성 증가

주요내용
-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 현행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현장출동 경찰관의 안내 의무 강화
  - 현행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개정 : 기존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 현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 확대
  - 현행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개정 :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
  - 현행 :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시 종전의 처분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 확대
-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추가(신설)
-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시 형사처벌(신설)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국가송무체계 개선

법무부 국가소송과 (☎ 02-2110-3202)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되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송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함과 동시에 점진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충분한 관련 법령 검토 및 조직 정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국가송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국가송무체계 1단계 개선 방안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20. 8.)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배경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성·통일성을 갖춘 국가송무체계 구축

주요내용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우선 이관(1단계)하고, 이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2단계)
※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 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 중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79)

2021년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20. 11.)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추진배경	민원인 범칙금 납부 편의 제고 및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하여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방지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장 현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신용카드 납부 시 사실상 분납 효과 기대)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5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21년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증명서 검색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추진계획	
추진배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종이서류 감축 추진
주요내용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운영 – 1단계 : ('19) 종이증명서 발급 양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 적용 – 2단계 : ('20)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확대(누적 100종) – 3단계 : ('2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 단계적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전자증명서 100종으로 서비스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 044-205-2472)

디지털 시대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2~3일 소요되었으나,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 '21년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공공 개인정보 활성화로 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강화('20.10.26.)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배경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직접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편익 증진
	주요내용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필수정보만 한곳에 모아 관리 및 활용하는 서비스
	시행일	2021년 2월 이후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 044-205-6463)

국민이 「정부24」 한 개의 웹사이트만 접속해서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중앙부처 수혜서비스를 '21년 2월에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4월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20. 5. 27.)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주요내용	개인(만 14세 미만 자녀 포함)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이용권 등 수혜 서비스를 쉽게 확인 가능
	시행일	2021년 4월 28일(잠정)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4)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였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예정지구 포함, 피해영향범위 포함)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주택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추진배경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주요내용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율 상향

현 행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온실	52.5%(최대92%)	47.5%
소상공인	59%(최대92%)	41%
취약지역	52.5%(최대92%)	47.5%

개 선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온실	70%(최대92%)	30%
소상공인	70%(최대92%)	30%
취약지역	87%(최대92%)	13%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72)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배경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5)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20.9.2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강화

추진배경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 구체화 • 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
시행일	2021년 1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4)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 도입됩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

-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됩니다.
-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뀝니다.
- 또한,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됩니다.

〈 '21년 7급 공채 시험과목 (예시 : 일반행정 직류) 〉

	1차(공통과목)					2차(전문과목)*			
현행	국어 (20문)			영어	한국사 (20문)	헌법 (20문)	행정법 (20문)	행정학 (20문)	경제학 (20문)
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 시험	검정 시험	헌법 (25문)	행정법 (25문)	행정학 (25문)	경제학 (25문)
	언어논리 (25문)	자료해석 (25문)	상황판단 (25문)						
				(기존 대체)	(2021년 대체)	*과목은 현행과 동일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7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20.6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문제/정답안내〉7급 PSAT 모의평가('20.11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 (PSAT) 도입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민간 호환성 제고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종전) 2단계(필기+면접) → (개선) 3단계(1차 PSAT + 2차 전문과목 + 3차 면접) •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4)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 2021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20.10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공고/공지사항〉인정기간 연장 관련 안내('20.10월)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수험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
주요내용	•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 (개선) 5년으로 연장 - 대상시험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 02-3150-1646)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써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양 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하여,
  - 검사는 6대 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또한 제정되어 함께 시행됩니다.('21.1.1.)
  ※ 다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2.1.1.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추진배경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주요내용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 •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설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 주체로 변경 •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단,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 02-3150-0666)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 이번 도입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자치경찰이 ▲ 학교폭력 ▲ 아동·여성 관련 범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 국가경찰위원회 ▲ 시·도교육감 ▲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

-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전국으로 확대('21.7.1.)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주요내용
-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사무)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
- (시도자치경찰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중단 후('20.2.24), 교육재개('20.7.1)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개발*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등 5개과정 15개유형 콘텐츠

- '20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하였으며, '21년부터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이에 따라 '20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소방관서 행정조치를 '21년 3월까지 유예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변경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실무교육 개선 전후 비교

주요내용

구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인원	50명 이내 (거리두기 1m 준수)	-
교육시간	집합교육 4H+ 사이버교육 4H	사이버교육 8H (의무6H, 자율2H)
실습·평가	교육기자재	실습 동영상 및 평가문제 활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5

문화·체육·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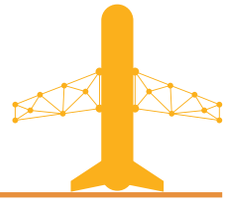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9)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1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원 인상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인원도 6만명 증가한 177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0년) 1인당 연 9만원, 171만명 → ('21년) 1인당 연 10만원, 177만명

- 또한,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및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추진배경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 지원금 상향 및 인원 확대 ('20년) 연 9만원, 171만명 → ('21년) 연 10만원, 177만명 •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20년도 발급자가 '21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을 보유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에 재충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042-481-4685)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수증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근거 마련

추진배경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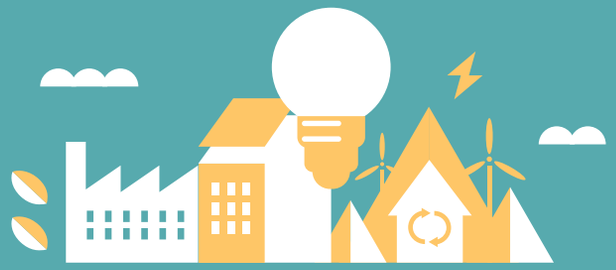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6

농림·수산·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지역개발과(☎ 044-201-1516, 1556)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합니다.

-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합니다.
-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예정) 또는 공모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배경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현황 분석, 면 소재지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와 축사·공장 등 이전·집적화하여 농촌공간 정비
주요내용	• (농촌재생뉴딜) 농촌 난개발의 원인인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을 이전·집단화하는 등 농촌공간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농촌공간 분석·진단) 농촌지역의 난개발 정도와 정주여건 취약성 등을 분석·진단하여 지자체의 농촌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지원 • (농촌재생 확산 지원) 지자체·주민 주도의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4)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추진배경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주요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4)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지원조건 :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1)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2)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4)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추진배경	사고·질병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주요내용	취약농가에 인력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 지원 -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40)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합니다.

  *농촌체험활동(일손돕기·영농실습), 주민화합활동(마을가꾸기·지역간담회), 현장견학(선도농가·선배귀농인) 등

-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세부시행계획 등 확정 후 게시 예정)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추진배경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이주전에 원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응력 제고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주요내용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지원
시행일	2021년 3월 예정(현재 세부시행계획 마련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044-201-2423)

'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21년 상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1년 하반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팜 혁신밸리 검색(완공시점에 배포예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추진배경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주요내용	•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전문지식 습득 및 경영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연착륙 유도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 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1년 하반기(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시)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27)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21년 시스템 구축, '22년 배포)

-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1년 구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첫발 뗐다(대한급식신문 보도, '20.8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
주요내용	• 거래시스템 :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 관리시스템 :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 정보서비스 : 공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시행일	시스템 구축기간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시스템 배포 : '22년)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0) 시범적용 : 양파, 마늘, 사과 → ('21) 시범적용 :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됩니다.

-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2021년 하반기(잠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정책분야별 자료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추진배경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며 도매단계에서도 ICT를 연계한 온라인거래로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화 도모
주요내용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에서 ICT 기반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유통 체계 구축 -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 시스템 구축 및 종합유통정보 플랫폼 마련 (~'22)
시행일	2021년 하반기(신규 사업체계 구축 및 품목 확대 적용)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2)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습니다.

-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도입 필요
주요내용	• 온라인 경매시스템 개발 및 도매시장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21) • 현장 경매에 온라인 거래 방식 도입 및 시범 운영 ('22: 1개소, '23(누계): 2~3개소)
시행일	플랫폼 구축 : 2021년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044-200-6142)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 까지 LTE급 통신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전국 기지국 263 개소)을 구축하여 해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보이용 혜택을 넓혀가겠습니다.
- 바다에서도 e-Nav 앱 및 e-Nav 선박 단말기를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가 목적지를 쉽게 안내받고, 해양안전·기상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 1월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20.8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도입

추진배경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선박운항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운항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①충돌·좌초 예방 지원 서비스 ②최적항로 지원 서비스 ③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서비스 ④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시행일	2021년 하반기(신규 사업체계 구축 및 품목 확대 적용)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7)

수산물 소비쿠폰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작년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사업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390억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할인쿠폰 발행) 대형 유통업체·온라인몰 310억원, 재래(전통)시장 60억원(지역 할인행사), 11개 광역시·도 자체 할인행사 개최 20억원

-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된 전국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점(1.2만여개)에 60억원을 지원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자체 할인행사 개최를 위해 11개 광역시·도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참여 지자체) 부산·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비급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월 설 명절 할인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추진배경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필요
주요내용	• 월별 소비부진 수산물 및 제철 수산물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 추진 •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체 할인 지원 • 지자체별 축제와 연계한 지역 특산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시행일	2021년 1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7

환경·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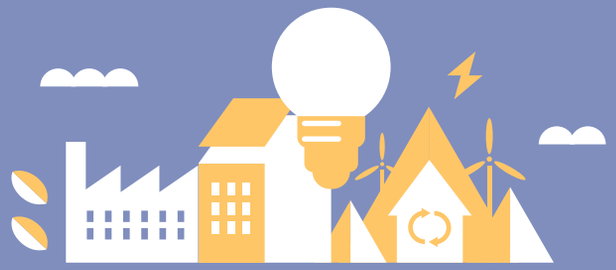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7)

'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3. 공포, '21.4.1. 시행)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1년 4월부터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철 이용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19.4.3. 공포, '21.4.1. 시행)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7)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1년부터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됩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 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http://ieps.nier.go.kr)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계획		
	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주요내용	• (기존) 10개 개별허가 → (현재) 1개 통합허가 • (기존) 획일적 기준 적용 → (현재)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 ('17.1.1.부터) 발전, 소각, 증기공급 ('18.1.1.부터) 철강, 비철, 유기화학 ('19.1.1.부터)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 비료, 질소화합물 제조 ('20.1.1.부터) 펄프, 종이, 전자제품 ('21.1.1.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4)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하여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됩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됩니다.

  *(현행)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난연제 2종 등 6종 → (추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프탈레이트 4종의 추가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20.11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제도 강화

추진배경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 신규 출시되거나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품을 사용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
주요내용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23종을 추가 (현행 26종 → 개정 49종)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4종을 추가 (현행 6종 → 개정 10종)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프탈레이트계 물질 추가는 2021년 7월 1일)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3)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다람쥐, 살모사 등 3속 565종(589종) → (개정) 과일박쥐(익수목 전종), 밍크(족제비과 전종) 등 4목 23과 1속 추가(4목 23과 4속 303종(9,390종))

- 수입·반입 허가 제도의 운영시 부족했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 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의 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추진배경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야생동물 유입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 주요 야생동물 감염병(ASF, AI, SFTS, 코로나바이러스,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신규 지정 •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 검토 의무화(살아있는 야생동물, 알·혈액 등 생산품 대상)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정부부처
기상청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 02-2181-0496)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합니다.
(2021년 11월 시범운영)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단기예보			중기예보							
예보대상일		*오늘 +1	+2	+3	+4	+5	+6	+7	+8	+9	+10	+11
예보 시간 단위	기존 ('20)	3시간 단위			12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개선 ('21.11.)	1시간 단위					12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추진배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와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기상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

주요내용: • 단기예보 예측기간을 +3일 후 → +5일 후까지 연장하고, 예측단위를 3시간 → 1시간 단위로 상세히 제공

시행일: 2021년 11월(시범운영)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 044-202-4929)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수업 등)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Wi-Fi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 폭을 조기 공급 합니다.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하여 차세대 Wi-Fi(6E)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집니다.

〈 현재 Wi-Fi와 6㎓ Wi-Fi 비교 〉

	현재 Wi-Fi	6㎓ Wi-Fi
실측 성능	(속도) 400~600Mbps, (지연시간)2~14ms	(속도) 2.1Gbps, (지연시간)2ms
주파수 폭	663.5㎒ 폭	1,200㎒ 폭 추가
실 사용 채널폭 및 수	80㎒ × 2개	160㎒ × 7개 추가

- 이번 6㎓ 대역 주파수 공급으로 5G급 성능의 Wi-Fi(6E) 사용을 통해 대국민 통신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5G 세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에 Wi-Fi(6E)가 탑재된 휴대폰, AP 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과기정통부, 6㎓ 대역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공급 보도자료('20.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과기정통부, 6기가헤르츠(㎓)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20.10월)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Wi-Fi 주파수 추가 공급 필요
주요내용	• Wi-Fi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6㎓ 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0월 16일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2)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 다만,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나,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매 1년마다 1회, (공동주택) 매 3년마다 1회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안전관리법 제정('20.3월)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공포번호 제17171호)('20.3월)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추진배경	공동주택 세대 및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 공동주택, 전통시장에 대해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세대·점포까지 확대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배선, 콘센트 등 •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2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1회 실시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2)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됩니다.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완화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안전관리법 제정('20.3월)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공포번호 제17171호)('20.3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추진배경	전기설비의 환경적 요인 등 운영관리 상태를 반영한 안전등급제도 시행
주요내용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 안전등급제도를 도입·시행 *(기존) 적합, 부적합 2단계 → (개선) A ~ E 5단계 • 전기설비의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의 변경 지정이 가능하며,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완화 혜택 제공
시행일	2021년 4월 1일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중견기업*도 투자·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됨으로서,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24호)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

추진배경	중견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근거 명확화
주요내용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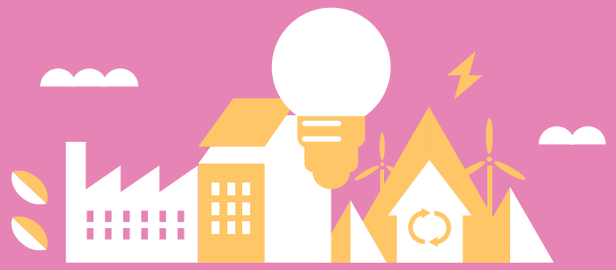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09

보건·복지·고용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2)

동물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합니다.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지원
  (지원요건)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

-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를 1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합니다.

  *('20년) 5,000명, 7,321백만원 → ('21년 정부안) 13,400명, 27,854백만원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주요내용	• (지원규모) 5,000명 → 13,400명 • (가입기회) 2회 → 4회(변동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1년에 흉부(유방)('21.上)·심장('21.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남성생식기('19.9월), 여성생식기('20.2월), 안과('20.9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흉부(유방)('21.上)·심장('21.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2021년 상반기에 흉부(유방), 하반기에 심장 초음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

구분		근로자	예술인
1.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등	(좌동)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
수급요건	기여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주요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좌동)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3.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우선지원:90일, 대규모:30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추진배경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률	2020년	2021년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1,078,000원(부담기초액)	월 1,094,000원(부담기초액)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142,680원	월 1,159,64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293,600원	월 1,312,80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509,200원	월 1,531,600원
장애인 미고용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월 1,822,480원(최저임금액)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20.12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2,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보험홈페이지〉사업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진배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추진배경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추진배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② 연 1.5%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종류	의료·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양육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한도	1,000 만원	1,250 만원	1,000만원 (1부모당 연 500)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	1,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200 만원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임금 범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주요내용
- **(융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일 (융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시행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확대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을 6,177명에서 7,777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고,
- 지원대상을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하여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20.12.3)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6,177명 → 7,777명
(1인당 지원금) 300만원 → 380만원
* ① (현행)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
(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
(개선) (기업)현행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
② (새일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 지급

시행일 2021년 1월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 044-204-3812)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7월)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추진배경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주요내용	(홑벌이 가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 -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84)

2021년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기존 256개 → 약 14,000여 개소 추가)

- 기존에 보건소(256개소)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2021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약 14,000개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추진배경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통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하여 질병부담 감소
주요내용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 현행 : 보건소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 확대 운영('20.6.22.~12.31.) - 개정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정부부처
질병관리청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719-7313)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2만명, 6,907백만원) →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6만명, 7,179백만원)

찾아가는 결핵검진 개요

추진배경	결핵 조기발견·조기치료,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
검진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
검진방법	설문조사,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객담검사 실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10 국토·교통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4)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산법 시행령 개정안('20.10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건설업역 개편 설명자료('20.10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추진배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주요내용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 - (현행)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 (개정)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시장 진출 허용 •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센터운영	2021년 1월 1일 이후(공공기관 발주공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042-481-4224)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이 '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새롭게 제정('20.6.9)된 「도시숲법」은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등이 조성·관리 및 이용·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산림청장·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청은 「도시숲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보도자료〉('20.6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인 오산시장
편집처 오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31-8036-7093
주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홈페이지 www.osan.go.kr

비매품